자원순환기본법

2020. 01.

한국폐기물협회

Contents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1
- 시행령 별표 ····· 89
- 시행규칙 별표 ····· 99
- 시행규칙 별지서식 ····· 10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9	제1조(목적) ····· 9	제1조(목적) ····· 9
제2조(정의) ····· 9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 10
		제3조(자원순환산업) ····· 11
		제4조(자원순환시설) ····· 12
제3조(기본원칙) ····· 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4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5		
제6조(사업자의 책무) ····· 15		
제7조(국민의 책무) ····· 16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 16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 16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 16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 18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 18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 19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 21	제7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 21
		제8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 25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 25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 26	
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 27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 27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9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30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31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31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 34		제10조(자원순환 통계조사) ····· 34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 36		제11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 ····· 36
제15조(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 37		제12조(시 · 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 관리) ····· 37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 37		제13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 관리) ····· 37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 41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 42	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 42	제1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 42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42		
		제1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 43
제19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 45	제11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 45	
		제16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 46
	제12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 47	
	제13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 48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 49	제14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 49	제17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등) ····· 49
	제15조(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 ····· 51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51
	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 52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 54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 54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 54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 59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 60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 62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64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 분할납부 신청 등) …… 64
	제22조(신용카드등을 통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 66	
	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 67	
	제24조(이의신청) …… 68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 68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69		
	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70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 70		
		제21조(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 71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71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 71	
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73		제22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 …… 73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74		
		제23조(재정적 · 기술적 지원 대상) …… 75
제27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 75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8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 76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 76	제28조(협의체) ····· 76	제24조(보고서의 제출) ····· 76
제30조(청문) ····· 78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78	제29조(권한의 위임) ····· 78	
	제30조(업무의 위탁) ····· 80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 81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82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82		
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 83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 83		
제35조(양벌규정) ····· 84		
제36조(과태료) ····· 84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84	
부 칙 ····· 85	부 칙 ····· 85	부 칙 ····· 85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 91 [별표 2]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 91 [별표 3]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 92 [별표 4]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 93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 94 [별표 6]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 96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 97	[별표 1]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방법 ····· 101 [별표 1의2]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 102 [별표 2] 품질표지의 표시방법 ····· 103 [별표 3]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 10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정 2016. 5. 29. 법 률 제14229호 타법개정 2017. 1. 17. 법 률 제14532호 타법개정 2018. 12. 31. 법 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 률 제15840호	제 정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2호 일부개정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0호 일부개정 2019. 4. 9. 대통령령 제29681호	제 정 2017. 12. 29. 환경부령 제732호 타법개정 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일부개정 2018. 12. 4. 환경부령 제782호 일부개정 2019. 3. 25. 환경부령 제803호 일부개정 2019. 3. 25. 환경부령 제803호 타법개정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1호, 2019. 4. 9., 일부개정]**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파쇄 · 압축 · 절단 · 용융 · 분리 · 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중화 · 산화 · 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사료화 · 퇴비화 ·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소성(燒成) · 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 복토재 · 도로기층재 · 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 · 운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 · 고철 등을 수집 ·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장비 · 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回收)·이용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설비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위탁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4.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6. 유기성 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 2)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이하 "비료"라 한다) 3) 목재성형제품, 톱밥 등 나무제품 4)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 제품 나.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7.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8.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 9.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제7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법인 ·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사본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 · 진동방지시설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 · 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 또는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9.〉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4.17.] 제12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4. 9.〉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9.〉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4.17.] 제8조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순환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可燃分), 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 분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사. 폐기물의 재활용·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아.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빛 재활용·처분 방법별 현황(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포함한다) 다.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 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마. 시·도 및 시·군·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바.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3.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회수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 · 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 관리)** 시 ·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 · 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		**제13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 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19. 3. 25.〉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자원순환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3. 25.〉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5.〉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재료·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5.〉 ⑨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25.〉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자원순환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자원순환 목표 설정·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3. 25.〉
⑥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4.17.] 제16조	**제9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6조제6항에서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개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이용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이용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나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	**제1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이하 "순환이용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 순환이용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 순환이용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 계획 및 이행 4. 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설립 목적 5. 사업 범위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 명세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회원명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등에 대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등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제11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마.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 악취물질 2.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3.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4. 제품등의 내구성(耐久性)	④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제16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기준)** 영 제11조제4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원료 · 재료 · 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폐기물 발생량 2.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3. 재질, 구조 및 함유된 유해물질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생산자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제13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1. 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14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물질 함유량	**제17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2. 유해물질 함유량 3. 크기, 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상(性狀) 4. 그 밖에 품질표지에 표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2.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3.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4.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 ②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3.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품질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순환자원 등에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5.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6.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지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50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서를 포함한다)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표지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 품질표지에 표시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공정·품질 심사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받을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표지를 해당 순환자원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1. 영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2019. 3. 25.〉 1. 영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다.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영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영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영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별표 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島嶼)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7. 영 별표 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영 별표 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수기관은 영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5월 20일까지로 하고, 제2회분은 7월 20일까지로, 제3회분은 9월 20일까지로, 제4회분은 11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3. 25.〉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5 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 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21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2조(신용카드등을 통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 통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시·도지사 :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가산금의 100분의 7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21조제8항에 따른 교부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 · 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 3.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및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 · 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정보체계를 구축 ·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적 · 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8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8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제24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3. 제17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5.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6.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7.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환이용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4.〉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 징수 라.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유예·분할납부 바.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2. 4.〉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이행실적의 평가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정보 공개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인정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3.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5.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7.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14229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부칙** **〈제28552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0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의무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732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6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82호, 2018.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 2019.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시행령 별표

[별표 1]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제5조의1항 관련)

구분	금액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40,000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15,000원

[별표 2]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제11조제1항 관련)

1. 납 또는 그 화합물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시안화합물
8. 유기인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석면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폴리브롬화비페닐
14. 트라이메틸아민
15. 아세트알데히드
16. 벤젠
17. 스타이렌
18. 톨루엔
19. 자일렌
2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제11조제6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현재 생산·가공·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대상 제품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하여 평가하되, 제품등의 재질,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하여 시험·분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제품등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방법

가.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의 가능성

1) 순환이용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다)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

2) 적정처분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

나)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재질·성질 등을 각각 분석한다.

다.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1)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을 확인한다.

2)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을 분석한다.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그 예외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라. 제품등의 내구성

1)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2)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분석한다.

3. 세부 평가에 따른 시험·분석방법

가. 측정 또는 시험·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가목에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서 작성방법

가. 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자 등 일반 현황

2)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가 사항별 세부 평가 결과

3) 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종합평가 결과

4)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방법 등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기준, 참고문헌,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령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별표 4]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총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항온·제습시설 및 후드시설을 갖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해당 실험실 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장비	수량
1) 이물질 분석	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2) 크기, 규격 등 성상 분석	순환자원의 규격과 크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3) 유해물질 분석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 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硝子類) 등	1식 이상

비고

1. 폐지, 고철의 이물질을 현장에서 측정·분석하는 경우에는 1)의 장비를 갖추는 대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계량증명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분석을 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유해물질의 시험·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의 장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산업기사 1명 이상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환경학, 토양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농화학, 농생물학, 보건학, 의학 등 관련 전공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순환자원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되어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가목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의 기술인력은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환경 관련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8. 12.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제17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100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50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나.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60
다.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5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나. 가목 이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비고

1. 위 표 제2호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나.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3.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2018. 12.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건설 폐기물은 제외한다)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비고

1. 위 표에서 폐기물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나.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3.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50	70	100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방법

(제11조 관련)

1. 최종처분율

가. 계산식

$$\text{최종처분율}(\%) = \frac{\text{최종처분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text{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직접 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이 표에서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재활용 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text{추가 발생량} = \frac{\text{추가로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의 양}}{\text{(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추가로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의 양)}} \times \text{잔재물 발생량}$$

2. 순환이용률

가. 계산식

$$\text{순환이용률}(\%) = \frac{\text{실질재활용량(톤)} + \text{순환자원 인정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text{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1호나목4) 및 5)와 같다.

3. 에너지회수율

가. 계산식

$$\text{에너지회수율}(\%) = \frac{\text{에너지화된 폐기물량(톤)}}{\text{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1)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

[별표 1의2] 〈신설 2019. 3. 25.〉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제13조제1항 관련)

1. 업종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파. 전기장비 제조업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별표 2]

품질표지의 표시방법

(제17조제3항 관련)

1. 도안 모형

순환자원 환경부	〈품질에 관한 정보〉 • • • •

가. 로고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한다.

나. 로고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2. 도안 요령

가. 도안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순환자원 포장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 또는 눈에 잘 띄는 단일색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도안의 크기는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순환자원의 포장, 홍보 인쇄물, 사업장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가 좁아 도안 전체를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도안 모형 중 품질에 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8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5호	지정 취소			

시행규칙 별지서식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기관・단체) (전화번호:)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결 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사업명:

5. 수행기간: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 17.>

순환자원 [ ] 인정 [ ] 재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자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인정 신청	대상 폐기물 종류		폐기물분류번호 (□□-□□-□□)	사용용도		
	총생산계획(톤/연):			신청기간:		
	연도별 생산계획	○년	○년	○년	○년	○년
		○톤	○톤	○톤	○톤	○톤
재인정 신청	종전 인정받은 순환자원 정보					
	대상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종전 인정기간: . . ~ . .		
		(□□-□□-□□)				
	재인정기간: 인정증료일 기준 10일 전까지			사용용도:		
	종전 인정사항 변경 여부: [ ]유, [ ]무			변경내용: 1.사용용도 2. 생산계획 3.기타( )		
시설현황	부지면적(㎡)			계량시설		
	오염물질 방지설비 현황 [ ]내기 [ ]소음·진동 [ ]수질 [ ]악취 [ ]침출수 [ ]해당없음					
	폐기물재활용시설			보관시설 및 보관 가능량 ㎥(톤/연)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의 [ ] 인정 [ ] 재인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이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마.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1부 바.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1부 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1부 아. 다음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4)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자. 다음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기스류처리업 등록증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나목, 다목 및 아목(「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나목 및 아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나.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다.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품목별 수수료 인 정: 40,000원 재인정: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기술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포함)	→	인정 여부 결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 인정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3. 사업장소재지:

4. 인정기간:

5. 인정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		
(□□-□□-□□)		

위 폐기물을「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순환자원 인정 취소내용	취소사유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취득, 2. 순환자원 기준 미충족		취소일자(취소를 통보받은 일자):
	대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보관량(톤)

	폐기물		운반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연/톤)
폐기물 처리결과		□□-□□-□□						
		□□-□□-□□						
		□□-□□-□□						
		□□-□□-□□						
처리완료일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취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또는 같은 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1부(「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유형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 ]순환이용사업자	

「자원순환기본법」 제18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5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 [ ] 인가 [ ] 변경인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다.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 명세서 1부 마.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바.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회원명부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이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인가서 작성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장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4. 사업내용:

5. 인가조건: *뒷면에 기재*

「자원순환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뒤쪽)

<인가조건>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품질표지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순환자원 인정현황	순환자원의 종류	순환자원의 사용용도
	순환자원의 인정 유효기간	

품질표지 신청내용	품질표지 표시내용 [ ] 유해물질 함유량 [ ] 이물질 함유량 [ ] 크기·규격 등 성상 [ ] 기타
	품질표지 인증기준(유해물질 및 이물질 함유량, 크기·규격 등 성상 등)
	품질표지 사용방법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제1항 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표지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1부 2.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3.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1부 4.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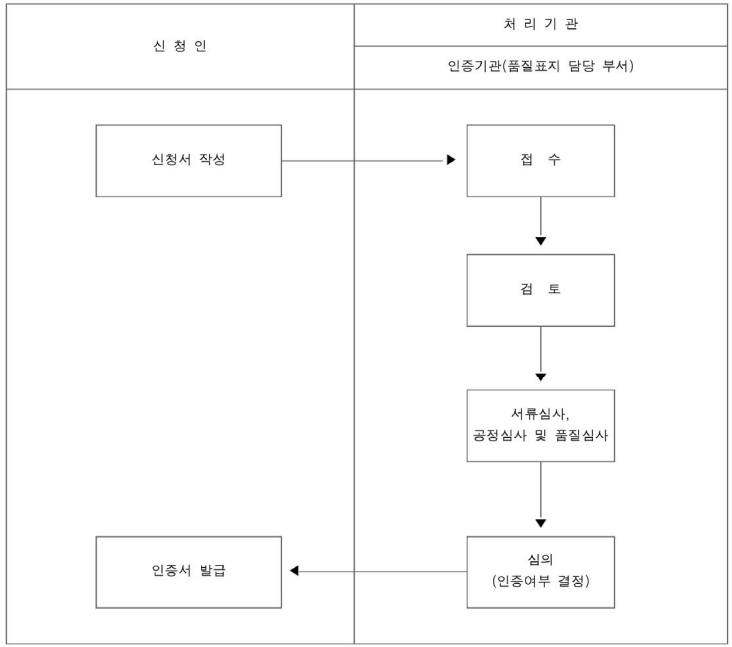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품질표지 인증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3. 소재지:

4. 품질표지 인증대상 순환자원:

5. 품질에 관한 정보: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의 품질표지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정 내용	시설		
	장비		
	인력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 및 현장)	→	결 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처리기관 (환경부)		처리기관 (환경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3. 소재지:

4. 시설·장비·인력 현황

시설	
장비	
인력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작성자)	직위	전화번호

납부의무자 구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감면대상 여부	[ ] 자가 매립 후 재활용, [ ] 소각열에너지회수, [ ]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 중소기업, [ ] 지정폐기물처분, [ ] 도서지역폐기물처분, [ ] 재난폐기물처분		
연간 매출액	원	총폐기물 처분량	kg

신고내용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 매립				[ ]	[ ]				
				[ ]	[ ]				
				[ ]	[ ]				
	총신고금액(원)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 소각				[ ]	[ ]				
				[ ]	[ ]				
				[ ]	[ ]				
	총신고금액(원)								

자가 매립 후 3년 이후 미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후 미재활용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부과율	납부금액 (원)
			해당 연도	1년차	2년차					
									50%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신고금액(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등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업종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3. 납부자 구분 및 감면대상은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감면대상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합니다)
4.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며, 감면신청서는 감면대상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5. 총폐기물 처분량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 양의 합계를 적습니다.
6.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7. 폐기물 유형란은 1.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3.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4. 건설폐기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로 적습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불연성과 가연성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란 참조
8. 산정지수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산정지수를 적습니다.
9. 납부금액란은 폐기물처분량에 해당 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 미재활용량에 대한 납부금액란은 3년 이후 미재활용량에 해당 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적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자가 매립 시설 현황	허가일시	사용기간	매립대상 폐기물종류	
	총매립지면적(㎡)	총매립용량(㎥)	기 매립량(㎥)	잔여 매립량(㎥)

신청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자가 매립량 (kg)	해당연도 재활용량			해당연도 매립잔량			총 감면금액 (원)
			중량 (kg)	감면율 (%)	감면금액 (원)	중량 (kg)	감면율 (%)	감면금액 (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실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자가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내 미재활용량 (kg)
			당해	1년차	2년차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니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신청인이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자가 매립시설 현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기 매립량 및 잔여 매립량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3. 자가 매립량은 해당 매립년도에 제출자가 스스로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적습니다.
4. 재활용량은 매립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연도별 재활용 양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요율, 산정지수는 부과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각각 적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4.>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납부의무자 구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청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처분방법		폐기물처분량 (kg)	폐기물 처분부담금 (원)	감면사유 (1~7)	감면율 (%)	감면금액 (원)
		매립	소각					
		[ ]	[ ]					
		[ ]	[ ]					
		[ ]	[ ]					
총감면금액								

연 매출액	원	폐기물 총처분량	kg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5.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1부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3. 폐기물처분량란은 감면 신청 폐기물의 처분량을 적습니다.
4. 폐기물처분부담금란은 감면 신청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당초 폐기물처분부담금액을 적습니다.
5. 감면사유란은 1. 소각열에너지 회수, 2.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3. 중소기업, 4. 지정폐기물 처분, 5. 도서지역 폐기물 처분, 6. 재난폐기물 처분, 7.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로 적습니다.
6. 감면율란은 신청하고자하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습니다.
7. 감면금액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연 매출액은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9. 폐기물 총처분량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상의 매립과 소각에 대한 폐기물처분량 합계를 적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제 1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 2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인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제 3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세관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수납인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제 4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서(한국은행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수납인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3. 25.>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분할납부 신청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횟수	납부기한	납부금액	비고
	제1회	5월 20일까지		
	제2회	7월 20일까지		
	제3회	9월 20일까지		
	제4회	11월 20일까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처 리 기 관: 시・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 분할납부 고지(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 ] 징수유예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 ] 징수유예, [ ] 분할납부 또는 [ ]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징수유예·분할납부·기간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 ]징수유예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불승인의 이유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승인, [ ]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의무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년도]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① 사업자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인정서 번호	제 호
⑤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순환자원 종류	생산량(톤/연)	판매량(톤/연)	판매금액(백만원)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량(톤/연)
총 계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요령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인정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생산·판매한 순환자원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⑧란의 판매처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4.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년도]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

① 사업자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업종

[ ]종이제조업 [ ]유리용기제조업 [ ]제철 및 제강업

순환자원 종 류	구입량 (톤/연)	공급자	사용량 (톤/연)	재고량 (톤/연)
계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작 성 요 령

1. 구입량은 순환자원의 사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의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 사용량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투입(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3.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년도]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① 사업자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인증서 번호 (인증일)	제 호 (. .)
⑤ 소재지	(전화번호:)		

⑥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 품질표지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생 산 내 역		판매 및 보관내역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종류	생산량 (톤/연)	판매량 (톤/연)	판매금액 (백만원)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량 (톤/연)
총 계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작 성 요 령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⑧란의 판매처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원순환기본법

2020년 1월 인쇄
2020년 1월 발행

발 행 한국폐기물협회
편 집 기획관리실
전 화 02-2680-7000

인 쇄 가현기획(031-423-6684)

자원순환기본법

한국폐기물협회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동 3층

TEL: 02.2680.7000 FAX: 02.2680.7070